

#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함진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667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4. 10.

발의자 : 함진규 · 박완수 · 김기선  
곽대훈 · 정유섭 · 이철우  
이채익 · 김성원 · 염동열  
권석창 · 이명수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(이하 “공사”)가 개발·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사업(이하 “신재생에너지사업”)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국외에서도 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공사가 직접 개발·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등에서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역제한 규제가 국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공사의 수상태양광 등 신·재생에너지 해외진출이 제약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국외의 경우 공사가 개발·관리하지 않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익을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2항 후단 신설).

##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있어서는 공사가 개발·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사업) ① (생 략)</p> <p>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<u>&lt;후단 신설&gt;</u></p>	<p>제9조(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<u>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있어서는 공사가 개발·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 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.</u></p>
<p>③ ~ ⑥ (생 략)</p>	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